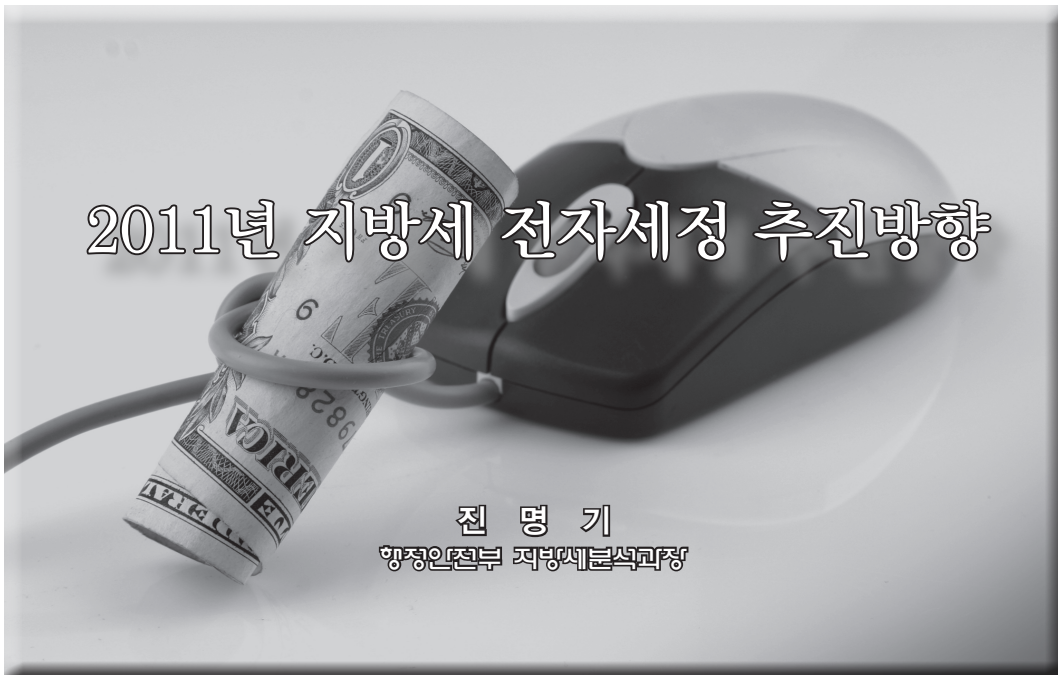




I. 추진배경 및 개요

2005년 중앙차원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보급하기 전에는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지방세 전산화를 추진, 10여종의 각기 다른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이유로 시·군·구 ↔ 시·도 ↔ 중앙간 수직·수평적인 시스템 연계가 곤란하였으며, 전산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건축·토지·자동차정보 등의 과세정보를 수작업으로 제공받아 처리하였으며, 지방세법·제도 변경시 신속한 대응력이 부족하였고, 업무처리에 대한 비표준화 및 개별적인 시스템운영·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보편화로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었으

나, 일부 광역자치단체(서울 · 부산 · 인천 · 울산)에서만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세 신고 · 납부 서비스(e-tax시스템)가 이루어져 자치단체간 정보화 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또한, 자치단체가 구축한 이택스(e-tax) 시스템도 해당지역 지방세만 납부할 수 있었고 타지역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어 납세자들은 여러 자치단체에 별도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추진 배경 〉

문 제 점	개 선
시군구별 시스템이 상이하여 정보공유 곤란	정보공유 가능한 표준시스템 개발확산보급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과다 소요	S/W 유지보수 및 시스템 관리 일원화로 비용절감
중앙 ↔ 지방간 수작업 방식의 업무처리	중앙 ↔ 지방간 실시간 정보공유로 업무효율성 향상
인터넷 등 IT 기반의 서비스 요구 증가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자 지방세서비스 구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2004년에 지방세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전국 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발한 후, 2006년 ~ 2007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 ·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eTax)시스템”을 구축(2006~2007)하였고, 2009년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지방세정연감 및 세수추계를 전산화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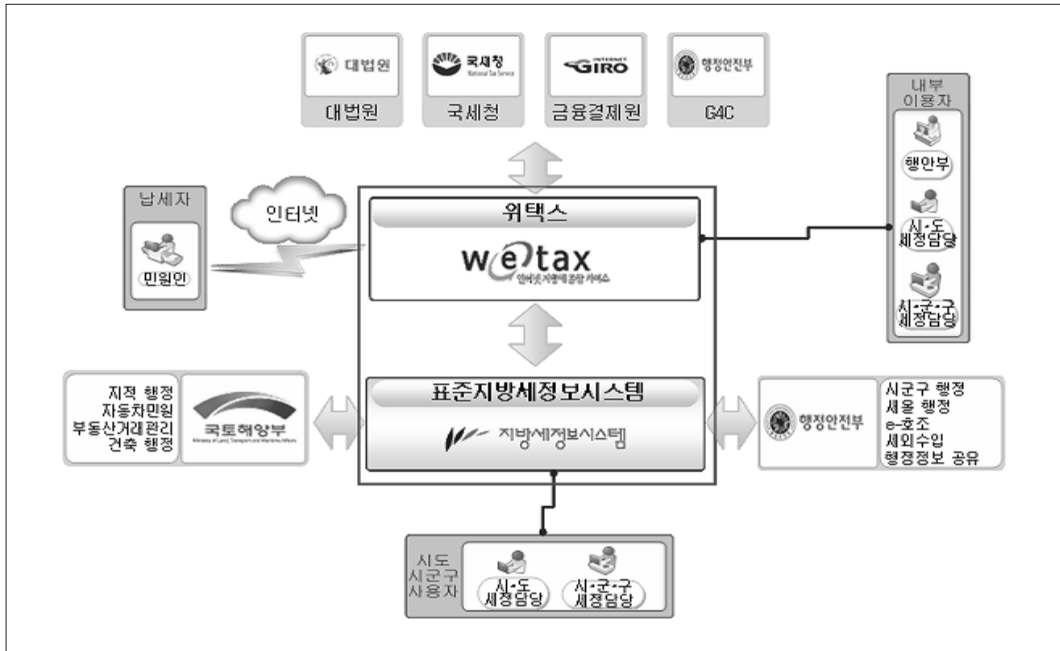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표준화(업무처리 기준 · 절차) 하고 세원정보 공유, 운영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한 지방세 업무처리용 시스템(자치단체 공무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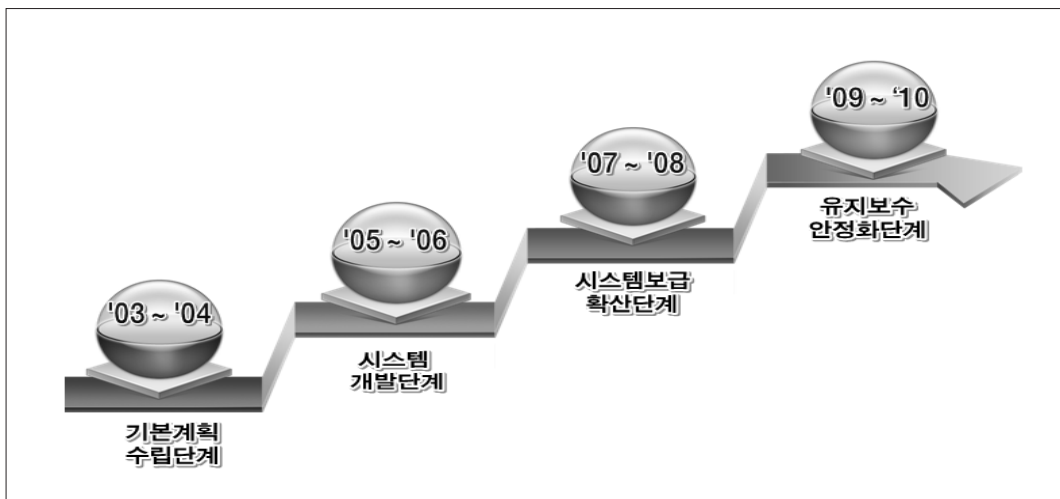
▶ 위택스(WeTax)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 · 납부하고, 지방세 관련 정보를 조회 ·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납세시스템(대국민용)

〈그림 1〉 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그림 2〉 지방세정보시스템 발전 경과



II. 2010년 추진성과 및 반성

지난해에는 대국민 인터넷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 개선하는 한편, 자치단체에 보급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및 관리자 모니터링 등을 통한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세청 · 관세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연계하여 세원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현재는 시스템 안정화를 넘어 지방세정의 선진화와 미래 세정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납세서비스 개선 및 지방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 감독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2010년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2011년 지방세 전자세정 운영방향 및 향후 지방세정보화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

1. 위택스 대국민 납세서비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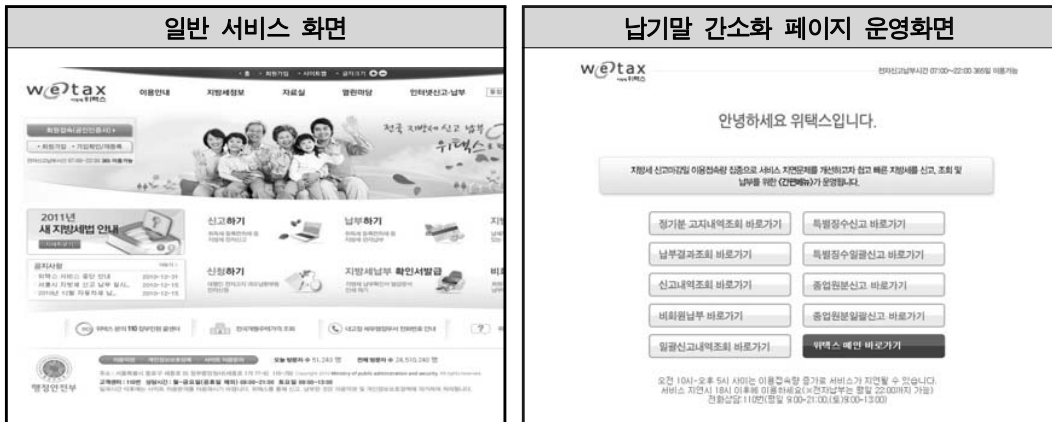
인터넷 납세시스템(위택스)를 통해, 2010년 6월, 부동산 등록세 등기유형 4종(지상권, 지역권, 가등기, 경매신청)에 대한 전자신고대상 확대 및 납기말 사용자 집중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현상을 신속 해소하기 위해 이용간소화 페이지 설치를 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전국 지방세 신고 · 납부에 대한 대행인 신청기능에 위임신고기능을 추가 제공하는 등 대국민 납세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200년 11월, 민원24시 인허가시스템과 위택스간 연계로 인허가 신청, 면허세 신고납부를 한번에 One-Stop처리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하였다.

2010년 12월, 신규 자동차 등록시 취득 · 등록세 신고대상 확대 등 위택스의 전자신고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위택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위택스 사용자 중심 서비스(간소화 페이지)



또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신고시 활용하는 전국 골프, 콘도회원권 등 시가표준액은 시·도별 책자로 고시되고 있어 자료열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1년 1월, 전국 자료를 위택스(DB)에 구축하여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해당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변화 신속한 대응

2010. 1. 1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세목이 신설됨에 따라 부과·징수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였다. 또한 2010. 7. 1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창원시로 자율 통합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구역에 맞춰 지방세정보시스템 변환 및 인터넷 대국민 납세서비스 정비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2010. 2~7월)하여 출범일에 맞춰 차질 없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0. 12. 1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취득세·등록세 처리) 시행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도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일 평균 3,000대의 자동차가 타시도에서 등록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6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2011. 1. 1)에 앞서 세목간소화로 부과(16개 세목 → 11개

세목) · 징수(19개 세목 → 24개 세목) 관리, 수정신고 · 성실납세자 보호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코드 · 민원 발급서식 등 세법 개정사항을 전산 개발하여 세정업무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Open하였다.(2011. 1월)

〈표 1〉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 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제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부과액 (건수)	징수액	부과액 (건수)	징수액	전자신고액 (건수)	전자납부액 (건수)	전자신고액 (건수)	전자납부액 (건수)
36.3조 (9,364만건)	32.5조	39.8조 (9,472만건)	36.0조	1.66조 (234만건)	2.99조 (1,262만건)	3.93조 (366만건)	5.26조 (1,799만건)

3. 지방세 체납 관리기능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온라인 연계하여 악성 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처리 하기 위한 공매사전실익분석, 공매의뢰 등 “전자공매”(2010. 8월)로 실익 없는 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체납관리 효율성을 증대시켰다.(사전실익분석 975건, 385억원, 전자 공매의뢰 4,324건, 2,581억원(2010. 6 ~ 2011. 1. 14))

〈표 2〉2010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한 전자공매 추진상황

2010. 8. 31(1차 적용)	2010. 12. 27(전산화 완료)
· 사전실익분석 활용으로 체납처분비 절감 · 공매의뢰(중지,재개), 교부청구 업무 전산화 ➡ 비용절감, 업무 편리성 ↑	· 전체 공매업무 및 자료의 전산화 → 공고·매각·배분 정보 연계 → 공매 업무협의 전산화 등 ➡ 체납관리 업무효율 증가

또한 2010년 8월, 관세청과 관세 환급금 정보를 공유하여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되는 관세 환급금

을 사전에 압류·징수(1.2억원)조치함으로써 세금누수 방지와 자치단체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2010년 11월, 자동차세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징수촉탁제도”를 실시하여 1년 동안 35,764건 영치, 115억원을 징수(2010.11월)하였다. 2010년 12월, 징수촉탁 수수료 관리와 징수촉탁 영치차량 공매관리기능을 개선하여 체납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4. 세정업무 투명성 확보

지방세 부과·징수시 오류·누락처리 및 세무비리 내부통제를 위하여 관리자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2009년 16종에서 2010년에 28종으로 추가 확대(2010. 5월)하여 세무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 2010년 9월, 등록세 수납사항 처리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 비리발생이 가능한 수기결재 업무 5종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재로 추가 개선하였다.

수기로 처리하던 지방세환급금 지급요청을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온라인 연계를 통한 “전자이체” 방식으로 개선하고,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에 우선 적용(2010.10월 경기도, 2010.12월 강원도, 제주도)하여 수기처리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임의수정 등을 원천봉쇄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었다.

2010.10~12월간 경기·강원·제주지역 지방세환급금 계좌조회 12.4만건, 전자이체 건수 16만건(496억원)

5. 지방세 통계 선진화 및 교육 활성화

2010년 2월, 1년 단위로 발간되는 지방세 세정연감 통계 중 110종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월별로 구축하여 급변하는 세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11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등 지방세 통계 수요조사를 통한 통계서식 7종을 발굴하여 전산화 반영하였다.

또한 2010년 8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세정연감 서식을 169종→180종으로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을 통한 조세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0년 4~5월, 자치단체 통계분석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분석담당 공무원 235명을 대상으로 중점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세 통계분석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향후 개선사항 >

- ① 대국민 납세서비스인 위택스(인터넷납세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용률 · 전자납부율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할 것이다.
- ② 잦은 지방세법 · 제도 변경 및 행정구역 개편 대응, 각종 지방세비리 방지(관리자 상시 모니터링) 등 조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추가적 고도화 및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③ 아울러 경기변동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지방세 세수전망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세수추계기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지방세 공무원의 통계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III. 2011년 지방세 정보화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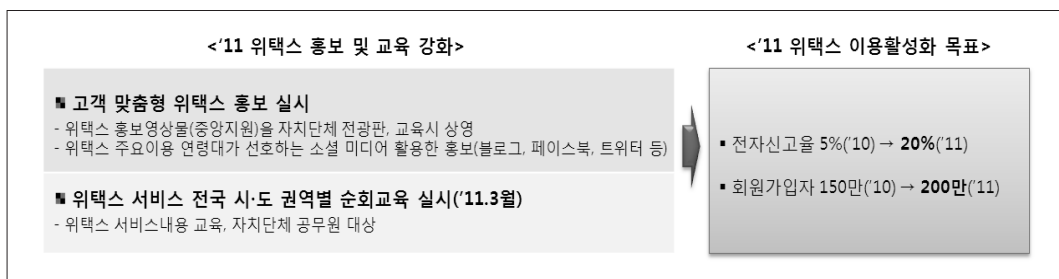
금년에도 대국민 인터넷 납세서비스(세외수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1월 60년만에 전면 개편된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재개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조기 안정화, “세종특별자치시” 발족, 2012년 새주소 적용에 대비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계 선진화 및 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세 통계역량 강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

1. 위택스 대국민 납세서비스 확대

위택스 인터넷 납세서비스 기능 확대와 통합 구축된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무(無)방문 납세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치단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세정운영을 수작업에서 전산화로 전환하여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 납부 · 환급안내 등의 핸드폰 문자서비스(SMS)와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전자납부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구분없이 전국

모든 세무부서에서 체납고지서 발급이 가능한 발급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세 징수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과 담당공무원에게 홍보·교육을 통하여 위택스 이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위택스 『200만명 가입자 축하행사』 등 위택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림 4〉 2011년 위택스 홍보·교육 강화 계획



2. 법·제도 변화의 신속한 대응

가. 재개발시스템 안정화 및 행정구역 개편 지원

개정 지방세법 시행에 맞춘 재개발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납세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제가 되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한 과세자료 정비 등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하여 과세자료 전환지원, 인터넷 대국민 납세서비스 정비지원, 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 2012년 시행 새주소 적용

2012년 시행되는 새주소(도로명) 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지번주소 체계가 도로명 주소체계로 안정적 전환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담인원을 구성, 주소체계 전환에 따른 시스템의 영향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새주소를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표 3〉 2012년 시행 새주소 적용(예시)

구 분	지 번 주 소(현재)	새주소(도로명) 주소(2012년 시행)
단독주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공동주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00아파트 00동 00호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00동 00호(서초동, 00아파트)

3. 체납관리 강화 및 세원정보 확대 등 지방세수 확충

체납 지방세 징수를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자치단체 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공매처리 전산화 개발 및 전국 지방세 체납자의 환급금을 공유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공매대금 배분액 온라인 압류(추심)를 통해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현재 44종(행안부 주민등록 정보 · 국세청 사업장 정보 등)의 정보공유를, 2011년에는 건축허가(국토해양부), 수렵면허(환경부) 등 14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표 4〉 2011년 지방세정보시스템 세원정보 공유 추진 대상

관련부처	정보명	목 적	추진일정
관 세 청	① 납세담보확인 발급자료 ② 수입담배 반출 결과	· 수입담배 불법반출에 따른 담배소비세 추가 징수	2011년 상반기
국 토 해 양 부	③ 건축허가신고 ④ 가설건축물신고 ⑤ 자동차운송사업	· 인허가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면허세 부과 시 활용	2011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⑥ 노래연습장 ⑦ 비디오판매 ⑧ 체육시설		
보 건 복 지 부	⑨ 소독업 ⑩ 약국, 의료기기 등		
환 경 부	⑪ 수렵면허		
농림수산물식품부	⑫ 비료 ⑬ 어업 ⑭ 수산물가공업		

4. 세정업무의 투명성 강화

지방세 비리 방지 등을 위하여 관리자 상시 모니터링 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11년에는 과세착오·과세누락 발생 소지가 있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착오 및 누락”, “주민세 재산분 과세착오 및 누락” 등 10종 이상을 확대하여 관리자 상시모니터링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2009. 4월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전자이체는 2011년에 6개 시도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 전자이체: 금융기관에서 장비구입(연계서버) 등에 비용 지출 필요

〈표 5〉 2011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관리자 상시모니터링 개발 대상

구 분	주 요 내 용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착오 및 누락(2종)	① 종업원분(종업원수 50인 이하) 과세착오 ② 종업원분(종업원수 50인 초과) 과세누락
주민세 재산분 과세착오 및 누락(2종)	③ 재산분(사업장 면적 330㎡ 이하) 과세착오 ④ 재산분(사업장 면적 330㎡ 초과) 과세누락
개별주택자료와 재산세 특성조사 불일치 과세자료(3종)	⑤ 개별주택 산정자료와 주택분 용도코드 불일치 자료 ⑥ 개별주택 산정자료와 주택분 구조코드 불일치 자료 ⑦ 개별주택 산정자료와 주택분 연면적 불일치 자료
재산세 토지분 사권제한 토지 감면 부 적정 대상(1종)	⑧ 토지특성자료와 재산세 토지분 자료를 연계 후 사권제한토지의 현황면적 불일치 자료
재산세 토지분 도시지역 내 농지 착오분리 과세(1종)	⑨ 개별주택 산정자료와 재산세 토지분 자료를 연계 후 농지자료 중 분리과세(과세형태)된 자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착오(1종)	⑩ 토지특성자료와 취득세(토지분) 자료를 연계 후 지목 변경된 신고납부 자료 중 과세누락

5. 지방세 통계분석 기능·역량 강화 및 정보화 교육 강화

급변하는 조세환경 변화와 지방세 통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통계발굴과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년 4~5월에는

자치단체 통계분석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세 통계분석교육과정(연간 150명)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연간 3,300명, 17개과정)을 통하여 지방세 부과 · 징수 및 비과세 감면, 체납관리, 압류, 공매 등 지방세 업무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IV. 향후 발전방향

현재 지방세정보시스템(표준, 위택스)은 정기적으로 많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순기능들을 추가 개발하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지원과 지방세 납부 · 징수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국민의 지방세 신고 · 납부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스마트 TV 등)를 활용한 전자신고 · 납부 서비스 강화 및 다양한 지방세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세계 1위 전자정부에 걸맞는 선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공간 · 위치 정보(GIS)를 융합하여 세무조사, 체계적인 상습체납자 관리 등을 통하여 지방세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방세 세수예측이 가능하고 각종 세정정책 개발과 통계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통계DW(Data Warehouse)를 구축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통계시스템 구축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